

협력 공인중개사 선정 평가기준

1. 공통기준

- 평가 기준일은 선정계획을 공고한 날로 한다.

2. 평가항목별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가. 중개실적	해당 단지의 매매 중개실적 (1건당 2점, 최대 40점) ※ 임대실적은 제외	40
	온라인 업체기준 5곳 이상 게재	20
나. 온라인 홍보능력	온라인 업체기준 4곳 게재	16
	온라인 업체기준 3곳 게재	12
	온라인 업체기준 2곳 게재	8
	온라인 업체기준 1곳 게재	4
	온라인 홍보 미시행	0
다. 이용편의성	1km 이하	20
	1km 초과 ~ 2km 이하	15
	2km 초과	10
라. 성실성	행정처분 등 사실이 없는 경우	20
	자격·등록취소, 자격·업무정지, 벌칙(징역 또는 벌금)	건당 △ 10점
	과태료	건당 △ 7점
	관할 감독기관의 행정처분(견책등)	건당 △ 5점

3. 항목별 평가방법

가. 중개실적 (40점)

- 최근 2년간 해당 단지의 주택매매 중개실적 (임대실적은 제외)

<중개실적 점수표>

구분	산정방법	점수
중개실적	해당 단지의 매매 중개실적 (1건당 2점, 최대 40점) ※ 임대실적은 제외	40

* 검증방법 : 해당 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나. 온라인 홍보능력 (20점)

- 접수기간 동안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매매 및 임대물건 등재여부

<온라인 홍보능력 점수표>

구분	산정방법	점수
온라인 홍보능력 (접수기간 동안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매매·임대물건 등재여부)	온라인 업체기준 5곳 이상 게재	20
	온라인 업체기준 4곳 게재	16
	온라인 업체기준 3곳 게재	12
	온라인 업체기준 2곳 게재	8
	온라인 업체기준 1곳 게재	4
	온라인 홍보 미시행	0

* 검증방법 : 해당 중개사가 제출하는 신청서에 첨부된 사이트 접속 후 물건 등재여부 확인

다. 이용편의성 (20점)

- 사무실 소재지와 해당 단지(정문 등)의 거리에 따라 평가

- 거리는 포털지도에서 해당단지 정문에서 사무실까지 최단 이동거리(자동차 기준)로 산정
- 계량점수 평가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산정
- 해당단지 내 도보로 이동 가능한 다른 출입문이 있는 경우, 해당 문에서 사무실까지 거리산정

<이용편의성 점수표>

구분	산정방법	점수
해당 단지와의 거리	1km 이하	20
	1km 초과 ~ 2km 이하	15
	2km 초과	10

라. 성실성 (20점)

- 최근 3년간 공인중개사에게 내려진 행정처분 등의 횟수에 따라 감점

-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에 따른 처분사실 등 유무

<성실성 점수표>

구분	산정방법	점수
행정처분 및 위반행위 등 유무	행정처분 등 사실이 없는 경우	20
	자격등록취소, 자격업무정지, 벌칙(징역 또는 벌금)	건당 △10점
	과태료	건당 △7점
	관할 감독기관의 행정처분(견책등)	건당 △5점

* 검증방법 :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관할 지자체에 공문으로 확인

